

의안번호	2209656
의 퇴 인	진성준의원
회 답 일	2025.5.2.
추계번호	25D2289

12 · 3 비상계엄사태 피해구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제정안에 따른 12·3비상계엄사태피해배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회의 참석수당과 그 지원조직의 운영비의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1억 6,000만원, 2027년 4,400만원 등 총 2억 400만원(연평균 1억 2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27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합계	연평균
12·3비상계엄사태 배상위원회	회의참석수당	20	7	27	14
	지원조직 운영비	140	37	177	88
합계		160	44	204	102

주 1. 소수점 이하 반올림으로 계산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 본 추계는 배상금과 의료비 등 지원금이 제의된 금액이며, 배상금과 지원금을 포함하거나 배상위원회와 지원조직을 다르게 구성·운영하게 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추계와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5조(배상책임 등)	국가는 12·3비상계엄사태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하고(제1항), 배상의 기준은 인과관계 및 그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함(제2항)	의무규정
		국가는 12·3비상계엄사태 피해자에 대하여 배상금 외에 의료비 등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고(제4항), 지원금의 지급 범위와 금액산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5항)	재량규정
2	안 제6조(12·3비상계엄사태피해배상위원회)	12·3비상계엄사태와 관련하여 피해자 인정 여부, 배상, 의료비 등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12·3비상계엄사태피해배상위원회(이하 “배상위원회”라 함)를 둔다(제1항)	의무규정
		배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제2항)	의무규정
		배상위원회에는 제1항에 따른 심의·의결에 필요한 사실관계 확인, 관련 자료의 수집과 검토 등을 위한 지원조직을 둘 수 있음(제4항)	재량규정
3	안 제9조(사실조사)	배상위원회는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데 필요한 사실 등을 조사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4	안 제11조(의견제출 등)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의료인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5	안 제15조(재심위원회)	신청인의 이의신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12·3비상계엄사태피해배상재심위원회를 둔다(제1항)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5조(배상책임 등)	×	[참고사항]에 기재
2	안 제6조(12·3비상계엄사태피해배상위원회)	○	
3	안 제9조(사실조사)	○	
4	안 제11조(의견제출 등)	○	
5	안 제15조(재심위원회)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본 추계에서 12·3 비상계엄사태피해배상위원회(이하 “배상위원회”라 함)의 민간위원 회의참석수당과 운영비는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 위원회’의 사례를 참고하여 추정함

[표 2] 제정안과 「세월호피해지원법」 비교

	제정안	「세월호피해지원법」
위원회 주요 업무	1. 배상에 관한 사항 2. 피해자 인정 여부에 관한 사항 3. 피해자에 대한 의료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배상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 2. 임시지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 설치	국무총리 소속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 구성	15명 이내	15명(정부위원 6명, 민간위원 9명)
지원조직	—	세월호 배상 및 보상지원단(2015.3.27.~2016.5.31.)
지원조직 규모	—	1단 4과(24명 전원 파견) — 보상총괄, 보상운영(인적피해), 보상지원(물적 피해), 법무지원(구상권 지원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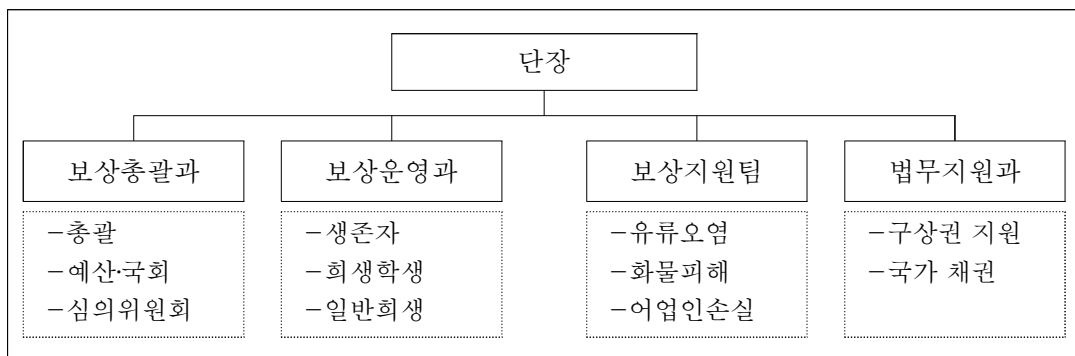
주: 해양수산부 주도 「세월호 배상 및 보상 지원단」은 2016년 6월 1일 조직이 축소(1단4과 → 1단3과)된 후 2017년 5월 31일까지 운영되었으나, 본 추계에서는 이를 고려하지 않음

자료: 해양수산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유사사례인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는 15명으로 구성·운영되고, 그 지원조직인 ‘세월호 배상 및 보상지원단’은 1단 4과, 정원 24명으로 운영됨

- 조직: 1단 4과(총괄, 인적피해 보상, 물적피해 보상, 구상권 지원)
- 정원: 24명
- 근무: 전원 파견근무¹⁾, 원소속기관이 인건비 지급

[그림 1] 세월호 배상 및 보상지원단(2015.3.27.~2016.5.31.) 조직도



자료: 해양수산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배상위원회는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와 동일한 15명으로 구성하되 2026년과 2027년 2년간 운영하며, 그 지원조직은 ‘세월호 배상 및 보상지원단’의 절반 수준(50%)으로 구성한다고 가정함

- 조직규모: 1단 2과(총괄, 인적피해 보상)
- 정원: 12명(관계 부처로부터 파견)
- 근무: 전원 파견근무, 원소속기관이 인건비 지급

□ 지원조직의 운영비는 ‘세월호 배상 및 보상지원단’의 당시 운영비에 통계청 발표 소비자물가상승률²⁾과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³⁾을 각각 반영하여 추정함

1) 해양수산부 15명, 국민안전처 5명, 법무부·기획재정부·교육부·보건복지부 각 1명

2) 통계청 발표 소비자물가상승률: 2015~2024년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소비자물가상승률	0.7%	1.0%	1.9%	1.5%	0.4%	0.5%	2.5%	5.1%	3.6%	2.3%

자료: 통계청 지표누리(<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4226>)

3) 소비자물가상승률(2025. 3. 경제전망 기준)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소비자물가상승률	1.9%	2.0%	2.0%	2.0%	2.0%	2.0%	2.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본 추계에서 사실조사(안 제9조), 의료인등의 의견청취(안 제11조), 재심위원회(안 제15조)의 추가재정소요는 배상위원회의 운영비에 포함된 것으로 하고, 12·3비상계엄 트라우마 치유사업은 국가트라우마센터(서울 광진구 소재)를 통해 진행하는 것으로 가정함
- 개정안은 부칙에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배상위원회를 2026년과 2027년 2년간 운영한다고 가정하였으므로, 추계기간은 2026년과 2027년 2년으로 함

[참고사항]

-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윤석열) 탄핵(2024헌나8)’ 사건에서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 행위를 국회에 계엄해제 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하였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함
- 국회사무처는 12·3 비상계엄사태 피해신고센터를 운영(2024.12)하여 인적·물적 피해를 접수하였는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표 3] 12·3 비상계엄사태 피해신고센터의 피해신고 접수현황

구분	인적 피해	물적 피해
피해규모	부상자 47명	65,634,000원
비고	이 중 공무상 재해(요양) 신청자는 3명으로 재해보상심의회(인사혁신처)의 심의를 거쳐 공무상 재해(요양)가 인정됨	시설 파손: 11,100,000원 설비 파손: 7,850,000원 집기 파손: 46,684,000원

자료: 국회사무처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성

- 헌법재판소가 계엄선포 행위와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 행위에 대해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반한 행위로 판단한 점을 고려할 때,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의 결과로 발생한 신체적·경제적·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국가배상법」, 「민법」 등 손해배상 관계법에 따라 국가의 배상책임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제정안은 12·3 비상계엄사태의 결과로 발생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소송의 방식이 아닌 국무총리 소속 배상위원회가 심의하여 배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것이므로, 동 제정안의 배상규정으로 인해 국가의 배상책임(재정소요)이 신규로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움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배상위원회 민간위원 회의참석수당(안 제6조)

- 회의참석수당은 배상위원회의 민간위원 인원에 회의일수와 회의참석수당 단가를 각각 곱하여 추계함
- 2015년과 2016년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의 연도별 회의개최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4]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의 회의개최현황

(단위: 회)

구분	2015	2016
회의개최횟수	17	6

자료: 해양수산부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배상위원회의 회의는 심의대상 안건의 규모⁴⁾를 고려하여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의 50% 수준으로 개최된다고 가정함
 - 배상위원회의 회의는 2026년 9회, 2027년 3회 개최된다고 가정
 - 회의참석수당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⁵⁾을 참고 1회당 25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
- (추계결과) 추계기간 동안 배상위원회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참석수당의 추가재정소요는 다음 표와 같이 추정됨

[표 5] 배상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의 추가재정소요: 2026~2027년

구분		2026	2027	합 계
회의 참석 수당	지급인원(A, 명)	9	9	—
	지급단가(B, 천원)	250	250	—
	회의일수(C, 일)	9	3	—
	소 계(D=A×B×C, 백만원)	20	7	27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4) 동 제정안에는 유류오염, 어업인손실, 민간기업에 대한 구상권 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5)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기획재정부)

· 위원회 참석비는 1일당 150,000원 내, 회의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추가 1회 50,000원 내로 편성
· 원격지에서 위원회 참석시 소요되는 경비, 단순한 회의 참석 이외의 사전자료수집, 회의안건 검토 등 별도의 용역제공에 대한 전문가 자문료, 국가업무조력자 사례금은 별도 편성

나. 배상위원회 지원조직의 운영비(안 제6조, 제9조, 제11조, 제15조)

- 배상위원회 지원조직의 운영비는 피해규모 등을 고려하여 ‘세월호 배상 및 보상지원단’ 운영비의 50% 수준으로 가정함
- 2015년과 2016년 ‘세월호 배상 및 보상지원단’의 회의참석수당을 제외한 운영비는 다음과 같음

[표 6] 세월호 배상 및 보상지원단 운영비(회의참석수당 제외)

(단위: 백만원)

구분	2015	2016
세월호 배상 및 보상지원단	224	59

자료: 해양수산부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

- (추계결과) ‘세월호 배상 및 보상지원단’의 운영비 50%에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추정한 배상위원회 지원조직의 운영비는 다음 표와 같음

[표 7] 배상위원회 지원조직의 운영비: 2026~2027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합계	연평균
배상위원회 지원조직 운영비	140	37	177	88

주: 세월호 배상 및 보상지원단의 운영비 224백만원(2015년)과 59백만원(2016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연도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산출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다. 추계결과

- 제정안에 따른 12·3비상계엄사태피해배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회의 참석수당과 그 지원조직의 운영비의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1억 6,000만원, 2027년 4,400만원 등 총 2억 400만원(연평균 1억 200만원)으로 추계됨

[표 8]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27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합계	연평균
12·3비상계엄사태 배상위원회	회의참석수당	20	7	27	14
	지원조직 운영비	140	37	177	88
합계		160	44	204	102

주 1. 소수점 이하 반올림으로 계산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 본 추계는 배상금과 의료비 등 지원금이 제외된 금액이며, 배상금과 지원금을 포함하거나 배상위원회와 지원조직을 다르게 구성·운영하게 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추계와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추계는 유사사례인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와 ‘세월호 배상 및 보상지원단’을 참고하여 회의참석수당과 지원조직의 운영비에 한정하여 추계한 것으로, 배상금과 지원금을 포함하거나 배상위원회와 그 지원조직을 다르게 구성·운영하게 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추계와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장삼열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장삼열	02-6788-4831	jsy@assembly.go.kr